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91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신영대・윤준병・안호영

전재수 · 김정호 · 이개호

박성준 • 염태영 • 한준호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 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 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 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 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인지하 거나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1년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그 밖에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3.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4. 그 밖에 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유 제3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격 재취득 제한)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레)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또는	
	<u>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u>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u>여</u>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①	
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	<u><삭 제></u>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		
<u>위</u>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 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신 설>

-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대 1년의 활동정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 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그 밖에 아동에 대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3. 이용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부당한 요구 또는 복수의 이용 가정으로부터 동일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4. 그 밖에 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유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

-----,

- 1. ~ 7. (현행과 같음)
- 8.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3조의2(자격 재취득 제한) 제3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u> </u>	사
람은 취소된 날부터 10년	ા	ᅰ
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재칠	취
득할 수 없다.		
제37조(과태료) ①		-
		-
<u>1천만원</u>		_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한 자
- ② (현행과 같음)